

학교법인 일송학원

2025학년도 4차 이사회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적임원	9인	2인
참석임원	6인	0인

1. 일 시 : 2025.10.21. 10:00~11:00(회의소집 통보일 : 2025.10.13.)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임원

- 이사(6인) : 윤희성, 정구영, 배순훈, 김종민, 김유승, 민인기

○ 결석임원

- 이사(3인) : 안병훈, 김중수, 조현찬

- 감사(2인) : 김용원, 이진규

○ 참석직원 : 전략기획국장 단현석, 인사국장 이성현, 관리국장 최훈철,
정책기획팀장 백승봉

4. 안 건

(1) 정관 개정(안)

(2)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3) 교원징계의결 요구(안)

(4) 교원직위해제(안)

(5) 기본재산 취득(안)

(6) 기본재산 처분(안)

5. 회의내용

○ 의장 윤희성 이사장은 정관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이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다.

(전략기획국장이 정관 개정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 배순훈 이사가 한림대학교의 지식미디어센터를 지식미디어융합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점과 부속병원의 현원을 고려한 사학연금 정원 조정임을 근거로 정관 개정을 찬성하다.

- 민인기 이사가 동의하고, 김유승 이사가 재청하여 본 안건을 심의한 후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의장은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찬성 : 6, 반대 : 0)

※ 별첨 1 :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간서명란]

김 유 승	김 종 민	민 인 기
-------	-------	-------

○ 의장이 한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다.

(인사국장이 [redacted] 대한 징계의결 관련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배경 및 관련법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 김종민 이사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대상자를 호명하여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하고, 정구영 이사가 동의하고 민인기 이사가 재청하여 순서대로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이사 전원 찬성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의장은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찬성 : 6, 반대 : 0)

※ 한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소속(학과)	직명	성명	보직	발령일자(임기)	심의결과
한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연구원	특임교수	박준식	부총장	`25.10.21	가결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고영웅	교무처장	`25.10.21	"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홍석민	New Hallym 혁신본부장	`25.10.21	"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일선	인권센터장	`25.10.21	"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교수	한우재	일송자유교양대학장	`25.10.21	"
한림대학교 의학과	교수	손종희	춘천성심병원 연구부원장	`25.10.21	"
한림대학교 의학과	교수	조재호	춘천성심병원 기획실장	`25.10.21	"
이현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현지	외부위원	`25.10.21 ~ `28.10.20	"
세원산업	대표	이금선	외부위원	`25.10.21 ~ `28.10.20	"

- 이상 9명 -

○ 의장이 교원징계의결 요구(안)을 상정하다.

(인사국장이 교원 징계 관련 사립학교법 및 정관, 교원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 민인기 이사가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에 찬성하다.

- 배순훈 이사가 동의하고 김종민 이사가 재청하여 본 안건을 심의한 후 표결에 부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redacted] 비위혐의에 대하여 2025년 10월 21일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의장은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찬성 : 6, 반대 : 0)

※ 별첨 2 : [redacted] 징계의결 요구서 1부

[간서명란]

김우웅	김종민	민인기
-----	-----	-----

○ 의장이 교원 직위해제(안)을 상정하다.

(인사국장이 [redacted]의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직위해제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 김종민 이사는 [redacted] (이하 '징계혐의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교수의 직위해제 시 [redacted]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발언하다.

- 민인기 이사는 [redacted]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는 직위해제를 유예하되, 정관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통지 수령 즉시, 직위해제 할 것을 제안하다.

- 정구영 이사가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형사사건 기소 통지 시 직위해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소통지 수령 즉시 집행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다.

- 이에 김유승 이사가 동의하고 배순훈 이사가 재청하여 본 안건을 심의한 후 표결에 부친 결과, 형사 사건 기소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직위해제(안)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 의장은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찬성 : 6, 반대 : 0)

○ 의장이 기본재산 취득(안)을 상정하다.

(관리국장이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지침과 기본재산 취득 현황을 설명하다.)

- 김유승 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한 기본재산 취득임을 근거로 찬성하다.

- 민인기 이사가 동의하고 김종민 이사가 재청하여 본 안건을 심의한 후 표결에 부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의장은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찬성 : 6, 반대 : 0)

※ 기본재산 취득 목록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취득금액	비 고
수익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06-19	· 대지면적 : 644.8 · 연면적 : 568.16	27,300	· VAT 별도

○ 의장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을 상정하다.

(관리국장이 기본재산 처분사유와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 배순훈 이사가 해외 부동산인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입가 및 감정평가 평균금액 중 높은 가격으로 기본재산 처분에 찬성하다.

- 정구영 이사가 동의하고, 김종민 이사가 재청하여 본 안건을 심의한 후 표결에 부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간서명란]

김유승	김종민	민인기
-----	-----	-----

- 의장은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찬성 : 6, 반대 : 0)

※ 기본재산 처분 목록

(단위 : sqft, USD)

구분	소재지	면적	취득금액	감정평가 평균금액
수익용	100 Carlyle(Winston) Dr South 9D, Cliffside Park, NJ, U.S.A	· Gross Living Area 1,572(약 146㎡)	· 500,000 (부대비용 포함)	· 687,500

주)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 예금으로 예치(향후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 사용)

- 제4차 이사회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안건은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공개하기로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 제4차 이사회회의록 간서명을 김종민, 김유승, 민인기 이사가 하기로 의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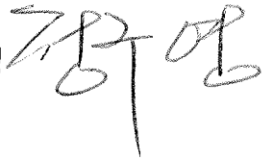
6. 폐회선언

- 의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공지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 윤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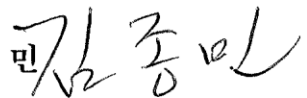
이사 정구영



이사 배순훈



이사 김종민



이사 김유승



이사 민인기



[별첨 1]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 96조 (지식미디어센터) ① 대학교에 지식미디어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교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한다.</p> <p>② (생략)</p>	<p>제 96조 (지식미디어융합원) ① 대학교에 지식미디어융합원을 두며 원장은 교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4)</p> <p style="text-align: center;">부속병원 일반직원 정원</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right;">총 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92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일반직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31명</td> </tr> <tr> <td>2급(참여·관리)</td> <td style="text-align: right;">1명</td> </tr> <tr> <td>3급(부참여)</td> <td style="text-align: right;">5명</td> </tr> <tr> <td>4급(참사)</td> <td style="text-align: right;">13명</td> </tr> <tr> <td>5급(부참사)</td> <td style="text-align: right;">77명</td> </tr> <tr> <td>6급(주사)</td> <td style="text-align: right;">82명</td> </tr> <tr> <td>7급(부주사)</td> <td style="text-align: right;">542명</td> </tr> <tr> <td>8급(서기·관리)</td> <td style="text-align: right;">11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기술직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49명</td> </tr> <tr> <td>4급(참사)</td> <td style="text-align: right;">6명</td> </tr> <tr> <td>5급(부참사)</td> <td style="text-align: right;">7명</td> </tr> <tr> <td>6급(주사)</td> <td style="text-align: right;">11명</td> </tr> <tr> <td>7급(부주사)</td> <td style="text-align: right;">124명</td> </tr> <tr> <td>8급(서기)</td> <td style="text-align: right;">1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기능직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2명</td> </tr> <tr> <td>7급</td> <td style="text-align: right;">9명</td> </tr> <tr> <td>8급</td> <td style="text-align: right;">3명</td> </tr> </table>	총 계	892명	일반직계	731명	2급(참여·관리)	1명	3급(부참여)	5명	4급(참사)	13명	5급(부참사)	77명	6급(주사)	82명	7급(부주사)	542명	8급(서기·관리)	11명	기술직계	149명	4급(참사)	6명	5급(부참사)	7명	6급(주사)	11명	7급(부주사)	124명	8급(서기)	1명	기능직계	12명	7급	9명	8급	3명	<p>(별표 4)</p> <p style="text-align: center;">부속병원 일반직원 정원</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right;">총 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063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일반직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74명</td> </tr> <tr> <td>2급(참여·관리)</td> <td style="text-align: right;">1명</td> </tr> <tr> <td>3급(부참여)</td> <td style="text-align: right;">5명</td> </tr> <tr> <td>4급(참사)</td> <td style="text-align: right;">13명</td> </tr> <tr> <td>5급(부참사)</td> <td style="text-align: right;">108명</td> </tr> <tr> <td>6급(주사)</td> <td style="text-align: right;">106명</td> </tr> <tr> <td>7급(부주사)</td> <td style="text-align: right;">630명</td> </tr> <tr> <td>8급(서기·관리)</td> <td style="text-align: right;">11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기술직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76명</td> </tr> <tr> <td>4급(참사)</td> <td style="text-align: right;">6명</td> </tr> <tr> <td>5급(부참사)</td> <td style="text-align: right;">17명</td> </tr> <tr> <td>6급(주사)</td> <td style="text-align: right;">24명</td> </tr> <tr> <td>7급(부주사)</td> <td style="text-align: right;">128명</td> </tr> <tr> <td>8급(서기)</td> <td style="text-align: right;">1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기능직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3명</td> </tr> <tr> <td>7급</td> <td style="text-align: right;">10명</td> </tr> <tr> <td>8급</td> <td style="text-align: right;">3명</td> </tr> </table>	총 계	1,063명	일반직계	874명	2급(참여·관리)	1명	3급(부참여)	5명	4급(참사)	13명	5급(부참사)	108명	6급(주사)	106명	7급(부주사)	630명	8급(서기·관리)	11명	기술직계	176명	4급(참사)	6명	5급(부참사)	17명	6급(주사)	24명	7급(부주사)	128명	8급(서기)	1명	기능직계	13명	7급	10명	8급	3명	<p>- 총계 : +171명</p> <p>- 일반직계 : +143명</p> <p>- 5급 : +33명</p> <p>- 6급 : +24명</p> <p>- 7급 : +88명</p> <p>- 기술직계 : +27명</p> <p>- 5급 : +10명</p> <p>- 5급 : +13명</p> <p>- 7급 : +4명</p> <p>- 기능직계 : +1명</p> <p>- 7급 : +1명</p>
총 계	892명																																																																									
일반직계	731명																																																																									
2급(참여·관리)	1명																																																																									
3급(부참여)	5명																																																																									
4급(참사)	13명																																																																									
5급(부참사)	77명																																																																									
6급(주사)	82명																																																																									
7급(부주사)	542명																																																																									
8급(서기·관리)	11명																																																																									
기술직계	149명																																																																									
4급(참사)	6명																																																																									
5급(부참사)	7명																																																																									
6급(주사)	11명																																																																									
7급(부주사)	124명																																																																									
8급(서기)	1명																																																																									
기능직계	12명																																																																									
7급	9명																																																																									
8급	3명																																																																									
총 계	1,063명																																																																									
일반직계	874명																																																																									
2급(참여·관리)	1명																																																																									
3급(부참여)	5명																																																																									
4급(참사)	13명																																																																									
5급(부참사)	108명																																																																									
6급(주사)	106명																																																																									
7급(부주사)	630명																																																																									
8급(서기·관리)	11명																																																																									
기술직계	176명																																																																									
4급(참사)	6명																																																																									
5급(부참사)	17명																																																																									
6급(주사)	24명																																																																									
7급(부주사)	128명																																																																									
8급(서기)	1명																																																																									
기능직계	13명																																																																									
7급	10명																																																																									
8급	3명																																																																									
<p><신 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김옥능	김종민	민인기
-----	-----	-----

[별첨 2]

■ [Redacted] 징계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Redacted]	② 소속	[Redacted]	③ 직위(급)	[Redacted]
		한자	[Redacted]	④ 주민 등록번호	[Redacted]	⑤ 재직기간	[Redacted]
	⑥ 주소		[Redacted]				
⑦ 징계사유	<p>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p> <p>[Redacted]</p> <p>상기와 같이,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에 저촉되는 행위로 수사를 받음에 따라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음.</p>						
⑧ 징계의결 요구권자 의 의견	<p>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중징계를 요구함.</p> <p>단, 수사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징계혐의 사실 및 징계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3항에 의거 형사재판 판결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견임.</p>						
<p>사립학교법 제61조 및 제6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0월 21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 (인)</p> <p>한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p>							

[간서명란]

김두승	김종민	민인기
-----	-----	-----